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소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3. 증거목록()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방문 없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사이버심판접수)를 이용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판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 열람자료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